◉서울전파관리소공고 제2026-98호

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(등록취소) 전 청문실시 공문을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송달되지 않아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을 실시합니다.

2026년 11월 02일

서울전파관리소장

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(등록취소) 청문실시

1. 근거법령

○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(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), 제26조(사업의 휴업·폐업 등), 제27조(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), 제92조(시정명령 등)

○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,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

2. 위반내용 :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시정명령(폐업신고) 미이행

3. 처분대상 : 대문자

4. 게재(게시)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5. 청문일시 : 2026. 11. 12. 10:30

6. 청문장소 :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다길 13-43 (궁동), 서울전파관리소

※ 담당부서명 :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(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담당)

(☏ 02-2680-1751, Fax 02-2680-1758)

7. 유의사항

○ 귀하는 청문에 출석하여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알려주시고,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귀하께서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.

○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니 별지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
○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<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행정처분(등록취소) 대상 >

순번	등록번호	사업자명	대표자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내용
1	301250047	대문자	박o모	시정명령(폐업신고) 미이행	등록취소